##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정성호·김병주·김성환

김영진 · 김영호 · 김정호

박 정・박희승・송기헌

안규백 • 윤후덕 • 임오경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 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 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에"를 "대규모 신규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가"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로, "사업"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항 제2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로, "지능정보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항 제4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아. 「하천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설
-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 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및 관련시설로 인정하는 사업
-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

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	15			
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u>사유</u>	<u>사유로서 총</u>			
	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u>다음</u>			
<u>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u>	<u>대규모 신</u>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u> </u>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대규모</u>				
<u>사업에</u>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 <단서 삭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공항시설
  -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설>

<신 설>

<신 설>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

   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 3. <u>「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u>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아.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설
-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도로・철도・도시철도 ・항만시설・공항시설・댐 ・수도・하천시설 및 관련 시설로 인정하는 사업
-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에-----국가연구개발사업으 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 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3. <u>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u>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 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u>가. 「지능정보화 기본법」</u>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 정보화 사업
  - <u>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u>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u>사업</u>

② ~ ⑥ (생 략)

	<u>한</u>	건설-	공사가	포현	<u> </u>	사
	업					
4.						
_						
_						
-				- <u>사업</u>	으로	서
<u>ス</u>	테28조	에따	라 제	출된	중기	<u> </u> 사
Ċ	<u> </u> 설계획	서에	의한	재정	기출	[0]
<u>5</u>	00억위	원 이상	) 수반	되는	사업	]
2	~ @	(현	행과 집	같음)		